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2호서식]

#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

1. 지 정 번 호: 제 호

2. 기 관 명:

3. 주 소:

4. 업무수행 범위: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**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** 직인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